

2023. 11. 28.(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1월 2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 부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위원장

주용학

2133-3120

시민감사팀장

박흥권

2133-3131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5쪽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자문회의 개최...주민감사 청구 요건 논의

- 27일(월), 자문회의 개최...주민감사 청구 대상·청구인 범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감사청구 기준 재정립
- 회의 후 간담회 통해 주민감사 관련된 다양한 의견·사례 공유, 실적 우수 자문위원에 표창장 수여도 이뤄져
- 서울시, 회의 결과에 근거해 향후 법령·제도개선 추진...신뢰성 제고·시민 권익구제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1월 27일(월) 오후 5시, 시청 대회의실(본관 3층)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30여 명(법률자문단 22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7명 등)이 주민감사 청구 요건과 관련된 2개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주민·시민감사 및 고충 민원 조사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관련 업무의 법적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022년 변호사·법학 교수 등을 중심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회의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자문회의는 ‘법률자문단’ 서영득 단장의 사회로 첫 번째 주제인 ‘주민감사 청구 대상<sup>1)</sup>’에 대해서는 김채영 변호사, 두 번째 주제인 ‘주

1)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 주민감사는 자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자치구 주민들이 일정 인원 수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

민감사 청구인 범위’에 대해서는 신소양 변호사가 주제 발표하고, 참석자 전원이 법률적 관점에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였다.

- 첫 번째 주제인 ‘주민감사 청구 대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법률적 검토를 통해 청구 대상 요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 두 번째 주제인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들이 감사청구인에서 제외되는 등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자문위원들 간 폭넓은 검토와 논의가 이뤄졌다.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023년 감사·조사 관련 분야별 우수한 법률자문 활동 실적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5명에 서울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식을 진행하였으며, 회의 후 간담회를 통해 공식적인 토론 자리에서 논하기 어려운 주민감사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과 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향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자문회의 결과를 주민감사 청구 요건을 심의·의결하는 감사청구심의회<sup>2)</sup> 위원들에게 안내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법령·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감사 업무의 법적·논리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다.
-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자문회의 결과를 통해 주민감사 청구 대상 및 청구인 범위와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향후 법령·제도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나아가 위원회 업무 수행에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단’ 자문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감사·조사 과정의 법률적 신뢰성을 제고하고 서울시민(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구제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운영 개요

- (역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고충민원조사·공공사업감시 관련 분야별 법률 자문
- (자격)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및 기타 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학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 (현황) 47명('23. 11월 현재) - 변호사 37명, 법학교수 8명, 법학박사 2명  
※ 2022. 7. 7. 이후 총 5차 위촉
- (운영실적) 시민·주민·직권감사 및 고충민원조사관련 법률자문 총 132건  
(감사 17, 고충민원조사 111, 공공사업감시 4)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감사청구심의회) 주민감사가 청구가 있는 경우 감사청구심의회에서 ‘주민감사 청구 요건의 심사, 청구인 명부상 유효 서평의 확인,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그 밖에 시장이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함

## 붙임 1

## 「법률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계획

### 추진목적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 및 조사 관련 업무 전문성 제고 필요
- 법적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전문가적 해석을 통해 집행력 확보 필요

### 행사개요

- 행사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자문회의
- 일시: 2023. 11. 27.(월) 17:00
- 장소: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34명(법률자문단 위원 22, 위원장 1, 옴부즈만위원 6, 팀장 5)

### 토론 주제

- 제1주제 : 주민감사 청구 대상
  -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
- 제2주제 :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
  -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 확대** 관련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

### 진행순서

구분	시간 (소요)	내용	비고	
1부	개회식	17:00~17:01(1')	개회선언	사회자(시민감사팀장)
		17:01~17:04(3')	참석자 소개	사회자
		17:04~17:12(8')	표창장 수여	법률자문단 위원 5명
		17:12~17:20(8')	인사말	위원장/법률자문단 단장
2부	자문회의	17:20~17:25(5')	주제 안내, 발표자 소개	좌장: 법률자문단 단장
		17:25~18:50(85')	주제 발표 및 토론	발표자 및 참석자 전원
		18:50~19:00(10')	총평	법률자문단 단장
		19:00~19:03(3')	사진촬영	참석자 전원
	정리	19:03~19:10(7')	폐회 및 만찬장 이동	사회자
		19:10~20:30(80')	만찬	

